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불법프로그램 등 이용자 과태료 부과 등 〉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99호)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74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불법프로그램 등 이용자 과태료 부과(김성원·전용기의원안)	3
2. 불법프로그램 등 제작·배포 처벌 강화(전용기의원안)	9

I. 제안경위

1. 김성원의원안

가. 발 의 자: 김성원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2024. 8. 6.

다. 회 부 일: 2024. 8. 7.

2. 김승수의원안

가. 발 의 자: 전용기의원 등 20인

나. 발 의 일: 2024. 8. 28.

다. 회 부 일: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김성원의원안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 게임 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 제작, 유통하는 등의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게임 산업이 많은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로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2항 신설 등).

2. 전용기의원안

현행법은 컴퓨터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이하 “불법 프로그램 등”이라 함)을 제작, 배포, 유통하는 등 게임산업 발전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그 처벌의 수위가 낮고, 불법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도 없어 그 실효성이 떨어짐. 불법이라는 의식 없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가 존재한다는 항변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오히려 엄벌주의를 따르는 것이 불법 프로그램의 사용을 줄이는 방법임.

따라서 관련자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신설하여 불법 프로그램 등을 근절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48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불법프로그램 등 이용자 과태료 부과(김성원·전용기의원안)

가. 개정안의 요지

두 개정안은 모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 또는 게임물을 고의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 김성원의원안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전용기의원안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김성원의원안	전용기의원안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 ----- ----- ----- ----- -----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1. ~ 10. (현행과 같음)
<u><신설></u>	<u>10의2. 제8호·제9호</u> <u>또는 제10호에 해당</u> <u>하는 컴퓨터프로그램</u>	<u>10의2. 제8호·제9호</u> <u>또는 제10호에 해당</u> <u>하는 컴퓨터프로그램</u>

현행	김성원의원안	전용기의원안
11. (생략) ② (생략)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생략) <u><신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u>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 하는 행위</u>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 ----- ----- ----- -----	<u>램이나 기기, 장치 또는 게임물을 이용 하는 행위</u>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 ①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7의3. 제32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행위를 한 자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32조¹⁾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제8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제9호), 위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제10호)를 금지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제8호의 행위는 현행법 제46조제3호의²⁾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9호 및 제10호의 행위는 현행법 제44조제1항제2호³⁾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9.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10.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게임물 관련 불법프로그램 등 금지·처벌 내용]

조항		내용(금지사항)	벌칙
제32조 제1항	제8호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6조 제3의2호)
	제9호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44조 제1항 제2호)
	제10호	제9호에 따른 불법행위를 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제작 또는 유통하는 행위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불법게임물 및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게임물 관련 불법프로그램 등의 근절을 위해서는 그 이용에 대해서도 법률상 제재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불법프로그램 등의 고의적 이용 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아래 표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이 불법 사설서버⁴⁾나 해킹⁵⁾·오토⁶⁾ 프로그램의 ‘제작·배포·유포 등’에 대한 단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매년 그

4) ‘사설서버’란 게임사가 서비스하는 공식 서버가 아니라 제3자가 임의로 게임을 개작하여 제공하는 등의 서버를 말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게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거나 게임물을 임의로 개조하여 레벨업 및 아이템 획득 등을 용이하게 하는 서버 등을 의미함.

5) ‘해킹’이란 해킹 프로그램(Hacking Program)을 줄여 일컫는 말로, 예를 들어 게임 내 사격 시 자동으로 목표물을 조준해주거나 통상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상대방의 위치 등을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경우와 같이, 게임 제공자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게임 내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함.

6) ‘오토’란 이른바 ‘자동사냥’ 등을 일컫는 말로, 온라인 게임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매크로’ 등을 통해 특별한 조작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몬스터 등을 사냥해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거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을 의미함.

건수가 적지 않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불법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제작·배포·유통 등 외에 그 ‘이용’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연도별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설서버·핵·오토 프로그램 조치현황]

(단위: 건)

구분	사설서버		핵·오토	
	수사 의뢰	사이트차단(접속기 배포·서버광고)	수사 의뢰	사이트차단(핵·오토 프로그램 배포·광고)
2019년	40	5,303	3	3,878
2020년	57	23,663	31	9,411
2021년	48	29,629	33	6,647
2022년	78	29,679	51	4,235
2023년	65	25,521	20	2,754
2024년(상반기)	29	16,192	9	619
합계	317	129,987	147	27,544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두 개정안은 과태료의 상한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바, 김성원의원안과 같이 이를 ‘20만원’으로 규정할 경우 불법프로그램 등의 ‘이용’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실효성이 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전용기의원안과 같이 이를 ‘1천만원’으로 규정할 경우 사업자 등이 아닌 개인 이용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로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보이므로, 그 적정 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게임물 관련 불법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직접 모니터링하여 제재조치를 취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불법프로그램 등은 실제 이용자들의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프로그램의 제작·유통 등 행위자에 대한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⁷⁾

7)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다만 불법이라는 인식 없이 이용한 자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와 대비는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임.

2. 불법프로그램 등 제작·배포 처벌 강화(전용기의원안)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불법프로그램 등을 배포하거나 배포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① ----- ----- ----- -----.
1. 1의2. (생략)	1. 1의2. (현행과 같음)
2. 제32조제1항제1호·제4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u>제8호·제9호</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u>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u>	<u><삭 제></u>

<u>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 위를 한 자</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46조제3호의²⁸⁾는 불법게임물 등과 관련한 규정인 제32조 제1항제8호⁹⁾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¹⁰⁾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불법수익을 노리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프로그램 등을 제작·배포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바, 그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의 법적 제재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¹¹⁾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10) 앞서 살펴본 게임 ‘핵’ 프로그램 및 ‘오토’ 프로그램 등을 의미함.

11) 머니투데이, “피해액만 2.5조원..“배그가 망하면 ‘핵’ 때문이다””, 2019.11.20., 매일경제, “게임업계

이에 개정안은 불법프로그램 등의 제작·배포 행위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범죄 수익의 박탈을 통해 게임물 관련 불법프로그램 등의 제작·배포 등을 근절하고 선량한 일반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

다만, 어떠한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함에 있어서는 그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수사·기소·판결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법정형으로 인해 처벌이 적정하지 않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정안과 같이 불법프로그램 등의 제작·배포에 대한 법정형을 현행의 5배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서는 현재 단속·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및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의 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76

“핵 때문에 못 살겠네””, 2018.3.26. 등 기사 참조